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 
지원에 관한 조례안  
(건강증진과 소관)



**행정재경위원회**  
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01호
- 나. 제출자 : 장규권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## 2. 제안이유

국가적으로 저출산·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모유수유 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모유수유실의 설치 권고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, 서울특별시,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마. 모유수유 관련 시설의 설치·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6조)

## 4. 관계법령

-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, 제10조의3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모자보건법」 제10조의3과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모유수유실의 설치·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
- 주요 조문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2조에서는 “영유아”, “모유수유실”, “모유착유실”의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함.
  - 안 제3조에서는 모유수유실 등 설치 권장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 - 안 제4조에서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교육, 홍보,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함.
  - 안 제6조에서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함.
- 모유수유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각종 연구결과로 증명되고 있으며 아울러 출산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모유수유 시설의 설치가 범국가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
- 동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확보와 아울러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는 만큼 소관부서에서는 현재의 시설설치 현황과 이용율 현황 및 그 제고방안 등도 함께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,
- 각종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를 권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정책을 시행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.
-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모자보건법」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붙임 : 관계법령 1부. 끝.

## 모자보건법

[시행 2022. 6. 22.] [법률 제18612호, 2021. 12. 21., 일부개정]

**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한 조사·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 12. 12., 2021. 12. 21.>

[전문개정 2009. 1. 7.]

**제10조의3(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12. 21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·홍보·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산후조리원,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,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09. 1. 7.]

##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6. 29.] [법률 제19302호, 2023. 3. 28., 일부개정]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1. 19.>

1. “장애인등”이란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,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.

**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,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5. 1. 28.]